

담배사업법

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

시행일 : 2026.4.24.



담배의 정의를 '연초의잎'에서 '**연초나 니코틴**'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

기존 전자담배 판매자 ('25.12.23. 이전 판매자)

- 거리제한 요건(2년간) 유예 나머지 요건 충족 필수
- 단,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
- 2년 후 소매인 지정 자동취소로 간주
- 기존 담배(연초잎) 판매는 불가
- 계속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.

신청기한 : **2026.4.23.(목) 18:00까지**

* 신규판매자('25.12.23.이후 판매자)는 개정법 적용

(문의 : 처인구 031-6193-5333 / 기흥구 6193-6332 / 수지구 6193-8346)

※ 전자담배 판매인이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없음

